라시에라 태전 입주자 모집공고

LA SIERRA
TAEJEON

[코로나 19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라시에라 태전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견본주택(http://lasierra.kr)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라시에라 태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별도공지)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라시에라 태전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비접촉체온계 운영)
  - 코로나 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행위탁자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19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131-1번지 일원에 공급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시 태전동은 수도권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법」제64조 제1항 4호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청 주택정책과-24797(2021.06.03)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청약은 라시에라 태전 홈페이지(http://lasierra.kr)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을 달리하여 인당 최대 2건 신청 가능하며, 동일 주택형에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은 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로 전산 추첨합니다. 당첨 및 계약 이후 다른 동호로 변경 불가합니다.

■ 동일 주택형별 중복청약 및 당첨으로 인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위탁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건축 관련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6. 03(목)입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 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시에라 태전은 상담전화(031-726-2001)등을 통해 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간혹 개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 및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시행위탁자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견본주택(http://lasierra.kr)을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 견본주택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기간 전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견본주택 사전예약 관람기간 및 청약일, 당첨자 발표일, 정당 계약일 등에서 부득이한 경우 견본 주택 관람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 전 대표번호로 관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청 주택정책과-24797(2021.06.03)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131-1 일원(태전7지구 B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2층 ~ 지상4층, 10개동, 총 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3년 0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층별 용도

구 분	용도
지하 2층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골프장, 주민카페), 근린생활시설-2
지하 1층	기계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창고, 근린생활시설-1
지상1층 ~ 지상4층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형	공급 세대수	세대별공급면적(㎡)			기타 공용	계약 면적	세대별대지 지분	비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84A1	22	84.9170	13.6877	98.6047	52.4360	151.0407	109.9315	
84A2	16	84.9170	24.5622	109.4792	92.5756	202.0548	109.9315	
84B	35	84.9170	12.9527	97.8697	53.1710	151.0407	109.9315	
84C	1	84.9692	14.1580	99.1272	58.9334	158.0606	109.9991	
84D	2	84.9692	14.1580	99.1272	58.9334	158.0606	109.9991	
계	76	6,453.8486	1,189.9431	7,643.7917	4,672.5868	12,316.3786	8,355.000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현관진입부, 지상주차장 등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에 있는 지하주차장, 공용면적, 관리사무소, 주민 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면적을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세대별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약식표기)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자납)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021-08-31	2021-11-30	2022-02-28	2022-05-31	2022-07-29	2022-09-30	입주시
84A1	202	101	337,748,705	493,751,295	831,500,000	10,000,000	73,150,000	83,150,000	83,150,000	83,150,000	83,150,000	83,150,000	83,150,000	249,450,000
		102	335,717,745	490,782,255	826,500,000	10,000,000	7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247,950,000
		103	335,717,745	490,782,255	826,500,000	10,000,000	7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247,950,000
		104	335,717,745	490,782,255	826,500,000	10,000,000	7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247,950,000
		105	335,717,745	490,782,255	826,500,000	10,000,000	7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247,950,000
		106	335,717,745	490,782,255	826,500,000	10,000,000	7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247,950,000
		107	335,717,745	490,782,255	826,500,000	10,000,000	7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82,650,000	247,950,000
		108	336,936,321	492,563,679	829,500,000	10,000,000	72,950,000	82,950,000	82,950,000	82,950,000	82,950,000	82,950,000	82,950,000	248,850,000
		109	340,592,049	497,907,951	838,500,000	10,000,000	73,850,000	83,850,000	83,850,000	83,850,000	83,850,000	83,850,000	83,850,000	251,550,000
	207	101	325,562,943	475,937,057	801,500,000	10,000,000	70,150,000	80,150,000	80,150,000	80,150,000	80,150,000	80,150,000	80,150,000	240,450,000
		102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3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4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5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6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7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8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9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208	101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2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3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4	326,172,231	476,827,769	803,000,000	10,000,000	7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240,900,000
84A2	203	101	291,987,466	571,012,534	863,000,000	10,000,000	7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258,900,000
		102	292,833,316	572,666,684	865,500,000	10,000,000	7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259,650,000
		103	292,833,316	572,666,684	865,500,000	10,000,000	7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259,650,000
		104	291,818,296	570,681,704	862,500,000	10,000,000	7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258,750,000
		105	291,649,126	570,350,874	862,000,000	10,000,000	7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258,600,000
		106	291,649,126	570,350,874	862,000,000	10,000,000	7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258,600,000
		107	291,141,615	569,358,385	860,500,000	10,000,000	7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258,150,000
		108	291,818,296	570,681,704	862,500,000	10,000,000	7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258,750,000
	204	101	291,987,466	571,012,534	863,000,000	10,000,000	7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258,900,000
		102	291,141,615	569,358,385	860,500,000	10,000,000	7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86,050,000	258,150,000
		103	291,818,296	570,681,704	862,500,000	10,000,000	7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258,750,000
		104	292,494,976	572,005,024	864,500,000	10,000,000	76,450,000	86,450,000	86,450,000	86,450,000	86,450,000	86,450,000	86,450,000	259,350,000
		105	291,987,466	571,012,534	863,000,000	10,000,000	7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258,900,000
		106	293,509,996	573,990,004	867,500,000	10,000,000	7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260,250,000
		107	294,186,676	575,313,324	869,500,000	10,000,000	7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260,850,000
		108	294,186,676	575,313,324	869,500,000	10,000,000	7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86,950,000	260,850,000
84B	201	101	316,626,717	462,873,283	779,500,000	10,000,000	6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233,850,000
		102	315,408,141	461,091,859	776,500,000	10,000,000	67,650,000	77,650,000	77,650,000	77,650,000	77,650,000	77,650,000	77,650,000	232,950,000
		103	314,595,757	459,904,243	774,500,000	10,000,000	67,450,000	77,450,000	77,450,000	77,450,000	77,450,000	77,450,000	77,450,000	232,350,000
		104	315,001,949	460,498,051	775,500,000	10,000,000	67,55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232,650,000
		105	316,626,717	462,873,283	779,500,000	10,000,000	6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233,850,000
		106	318,251,486	465,248,514	783,500,000	10,000,000	6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235,050,000
		107	320,282,446	468,217,554	788,500,000	10,000,000	68,850,000	78,850,000	78,850,000	78,850,000	78,850,000	78,850,000	78,850,000	236,550,000
		108	319,063,870	466,436,130	785,500,000	10,000,000	68,550,000	78,550,000	78,550,000	78,550,000	78,550,000	78,550,000	78,550,000	235,650,000
		109	318,251,486	465,248,514	783,500,000	10,000,000	6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78,350,000	235,050,000
	205	101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2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3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4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5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6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7	326,172,231	476,827,769	803,000,000	10,000,000	7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240,900,000
	206	101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2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3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4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5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6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7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8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109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209	101	324,344,367	474,155,633	798,500,000	10,000,000	6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79,850,000	239,550,000
	210	101	317,845,294	464,654,706	782,500,000	10,000,000	68,250,000	78,250,000	78,250,000	78,250,000	78,250,000	78,250,000	78,250,000	234,750,000
		102	317,845,294	464,654,706	782,500,000	10,000,000	68,250,000	78,250,000	78,250,000	78,250,000	78,250,000	78,250,000	78,250,000	234,750,000
		103	317,439,101	464,060,899	781,500,000	10,000,000	6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234,450,000
		104	317,439,101	464,060,899	781,500,000	10,000,000	6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234,450,000
		105	317,439,101	464,060,899	781,500,000	10,000,000	6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234,450,000
		106	317,439,101	464,060,899	781,500,000	10,000,000	6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234,450,000
		107	317,439,101	464,060,899	781,500,000	10,000,000	6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234,450,000
		108	317,439,101	464,060,899	781,500,000	10,000,000	6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78,150,000	234,450,000
		109	318,657,678	465,842,322	784,500,000	10,000,000	68,450,000	78,450,000	78,450,000	78,450,000	78,450,000	78,450,000	78,450,000	235,350,000
84C	208	105	370,319,839	566,180,161	936,500,000	10,000,000	8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280,950,000
84D	205	108	370,319,839	566,180,161	936,500,000	10,000,000	8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280,950,000
	209	102	370,319,839	566,180,161	936,500,000	10,000,000	8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93,650,000	280,950,000

※ 공급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호실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시행위탁자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음.
- 본 주택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위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본 주택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무상 제공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본 공동주택의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본 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분양되며, 전세대 발코니확장을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사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시행위탁자에 대하여 발코니 미확장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으로서 입주일에 완납하여야 함. (단, 중도금에 대해서는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시행위탁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중도금,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오니, 계약자는 필히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 하여야 함.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Ⅱ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법인 청약 시 법인 대표자 명의로 인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직원 등 대표자가 아닌 경우 당첨되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약이 불가하며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단, 당첨자 명의로 계약은 가능함)

※ 거주지역,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여부, 세대주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당 청약신청 가능 건수 : 1인 최대 2건 청약 가능. (동일인이 동일 주택형에서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가능하며, 개인 정보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인증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시행위탁자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일정

구분	청약신청 및 청약금 납부	당첨자 발표	정당 계약	청약신청금 환불
일정	2021. 06. 14(월) 10:00~18:00	2021. 06. 15(화) 10:00 이후	2021. 06. 16(수) ~ 2021. 06. 17(목) 10:00~18:00	2021년 06월 22일(화) 이후
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버견본주택 게시	견본주택 방문 계약	환불 일정은 시행위탁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라시에라 태전 사이버견본주택 (www.lasierra.kr)		라시에라 태전 견본주택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11번길 4)	

※ 청약 신청한 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동일 주택형별, 호별 구분 없이 추첨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당첨자 명단은 견본주택 내에 게시하지 않으며, 당첨자 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자 과밀 또는 시행위탁자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의 사정으로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안내

- 인터넷 청약 안내

구분	내용
이용방법 및 절차	청약신청 홈페이지: 라시에라 태전(www.lasierra.kr) , 스마트폰 및 PC 가능 청약신청 홈페이지 접속 → 청약신청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본인 인증(본인명의 휴대폰) → 주택형 선택/개인정보 및 환불계좌 입력 → 청약 및 지정계좌번호 확인 → 청약금 입금 → 청약접수 완료

※ 당 사업장은 주택공급 질서의 확립 및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아래서류 구비하여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구비서류 : 청약신청서(견본주택에 비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청약신청 법인명의) 1통, 법인 대표이사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별, 호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해당일 해당시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금 입금전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금 계좌에 일부 금액이라도 입금 시 청약 취소는 불가합니다)

구분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주택형"별	일천만원 / 건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271201-04-26912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청약신청금은 2021년 06월 14일(월) 18:00까지 입금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타입을 달리하여 1인 최대 2건 청약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 타입에서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2건 청약 시 청약신청은 각각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금액은 합산금액(1건 청약 시 1,000만원 / 2건 청약 시 2,000만원)을 입금하며, 최종 청약접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청약신청금 미입금 또는 일부입금 시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됨)

※ 청약건수와 신청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택수가 많은 주택형(84B → 84A1 → 84A2 → 84D → 84C)부터 순차적으로 당첨을 인정합니다.

※ 청약신청 시 지정된 청약신청금 입금계좌로 청약신청자 본인이 청약신청금 입금 후 당첨될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본인 외에 타인의 명의로 입금 후 당첨되는 경우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계약이 불가하며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당첨된 동·호수는 부적격처리 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 청약신청금 환불일은 2021년 06월 22일(화) 이후이며, 청약신청 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일괄 송금합니다. (환불일정은 시행위탁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되며,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기재한 환불계좌 오류, 환불 불가계좌 및 기타사항으로 환불이 불가한 경우 환불 지연에 대하여 시행위탁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은 당첨과 무관하게 일괄 환불되며,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청약자 본인 명의의 입금이 아닌 경우 환불을 위하여 추가적인 소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환불이 지연되어 청약자 본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청약자 본인명의로 청약신청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타입을 달리하여 1인 최대 2건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나, 청약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최대 1건만 당첨 됩니다.
- 청약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청약신청금 납부(일부 금액 납부 등)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견본주택 방문 시 현장에 비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청약을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휴대폰을 지참하여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장이 혼잡할 시 안내가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내 계약금을 별도로 입금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시행위탁자가 임의 분양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수도권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의 기간(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1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Ⅲ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정당계약 기간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당첨자께서는 사전 예약 후 계약 장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일시	계약 장소
2021. 06. 16(수) ~ 2021. 06. 17(목) 10:00~18:00	라시에라 태전 견본주택(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15-10)

※ 계약체결 전 아래 "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국민은행	271201-04-26818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입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행위탁자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상기 청약신청금 환불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1동 101호 홍길동 → 201101홍길동)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의 정당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및 단지 내 건축물 등의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시행위탁자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합니다(1차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됨).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시행위탁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시행위탁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부터 제6항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공급대금/추가선택품목대금,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주택 계약용)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공급대금/추가선택품목대금,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대표이사 신분증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견본주택에 양식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주택 계약위임용)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법인 계약 시 법인 대표자 명의로 당첨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직원 등 대표자가 아닌 경우 당첨되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받으며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여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시행위탁자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공급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호실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자와 분양상담 시(전화상담 포함)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등), 금융시장 변화, 대출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되거나 불가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한도 및 금리 등 조건 변경, 대출불가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는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상 고지된 중도금 납부일정 및 비율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시 잔금담보대출은 개인의 소득(DTI 등), 정부시책, 대출취급기관 상황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총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 및 금리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시행위탁자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시행위탁자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 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대출비율은 중도금 1~5회차 50% 이내로 대출이자는 무이자조건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최초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 [저축성수신금리]인 연0.85%의 할인률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의 발급여부에 따라 대출 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일부주택형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의 대상이 아니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증대상 세대보다 높은 금리 적용 및 신용 등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위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경비 관련하여 시행위탁자에서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입주 시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경비를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 지역(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정보제공 미동 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 시 시행위탁자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 45일 이전, 2일에 걸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2월

-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입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시행위탁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완납여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이 부과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주택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 골프장, 주민카페, 근린생활시설1, 2 등의 조경 및 시설물은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하나의 단지이며, 하나의 단지로 부대복리시설과 공동주택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며, 부대복리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함.

Ⅳ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의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함.

■ 기본적용품목 (무상옵션)

주택형	제품	설치장소	제조사	품번	비고
전주택형	인덕션 빌트인	2층 주방	삼성	삼성 NZ63T4507AK	1구 인덕션 + 2구 하이라이트
	주방 상판 & 후면		LG하이막스	G235 캔디화이트	MMA 인조대리석
	아일랜드주방 목도어		한솔 PET	HT8901M (화이트)	색상 : 화이트
	시스템 옷장	3층 드레스 룸	SN D&G	시스템가구	일반기둥형시스템가구 비조명
	천정형시스템에어컨	2층 거실	삼성	AJ072MB1PBC1	무풍기능, 15평형
		3층 침실1	삼성	AJ023MB1PBC1	무풍기능, 6평형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부가세 별도)

주택형	제품		설치장소	공급금액(원)	제조사	품번	비고	미선택시
전주택형	현관클린시스템		1층 현관	300,000	SP팩토리	SPS-101	에어브러시	기본
	주방 상판 & 후면	84A1, 84A2, 84B	2층 주방	1,500,000	PANARIA_MAXA	피에트라 그레이	12T 세라믹 상판 PET색상 (진회색/백색) 선택형	화이트 인조대리석
		84C, 84D		3,600,000				
	아일랜드주방 상부 선반			2,000,000	WAM PLAYER	금속 상부 선반	아일랜드 주방 상부 금속 선반	없음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 냉동, 변온)			4,200,000	삼성	RR39T7695AP	빌트인 냉장고 (380L)	자리 비움
						RZ32T7665AP	빌트인 냉동고 (318L)	
						RZ24T5660AP	빌트인 변온냉장고 (240L)	
	빌트인 인덕션 & 식기세척기& 오븐			2,300,000		NZ63T5707AK	3구 빌트인 인덕션	기본
						DW60T8075TCT	빌트인 식기세척기 (12인용 / 컬러:코타차콜)	기본
						NQ50H5533KS	빌트인 오븐 50L	슬라이드 밥솥레일
	벽 확장+ 드레스 룸 공사	84A1, 84A2, 84B	3층 침실2,3	2,000,000	국내가구사	–	확장형, 드레스 룸	기본 침실2,3 분리
		84C, 84D		900,000				
	천정형시스템에어컨		3층 침실2 3층 침실3 4층 침실4	2,400,000 ("벽 확장+ 드레스 룸 공사" 선택 시 2,000,000)	삼성	AJ016MB1PBC2 AJ020MB1PBC1	무풍기능, 6평형	없음
	시스템 선반		3층 침실1 드레스 룸	700,000	SN D&G	SN-5500	드레스 룸 시스템 가구, 판넬벽, 조명형	기본

※ "벽 확장+드레스 룸 공사"와 "천정형시스템에어컨"을 모두 선택할 경우 침실2, 침실3이 확장 된 침실에 1대의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조건 및 일정

구분	계약금	잔금
납부 시기	계약 시	입주지정일
납부 금액	10%	9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중도금/잔금	국민은행	804637-04-019260	안강건설	입금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202호 당첨자 홍길동 → 101202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101동 202호 홍길동→'101202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시행위탁자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에 납부 바라며, 시행위탁자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함.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Ⅴ 유의 사항

■ 공통 유의사항

〈일반사항〉

- 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정의)제20호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연립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10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9조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제2항·제13조(기준척도)·제31조(안내표지판등)·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입주민의 편의성의 향상을 위해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설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시행위탁자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 청약금을 일부라도 입금한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및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준공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자 책임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설계도서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설계 도서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위탁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시행위탁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위탁자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타 지역, 타사 또는 사업 관계사(시공사 포함)가 공급한 주택 및 본 사업지 개발 이후 향후 공급되는 주택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 주택과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해당 수분양자의 동의를 득하여 일부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진행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 세대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위탁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시행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건물은 지질조사에 따른 지하수위를 검토하여 부상방지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나, 공사 중 상향수압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주택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차량전조등에 의한 현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5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맞게 설계함.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주변환경 관련〉

- 태전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 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며 개발계획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태전지구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서측 보행자 도로변에서 보행자 진출입이 가능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측 회안대로 국도변에서 소음이 발생함. 사업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남측으로 광남중학교 학교용지와 접해 있어 학습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광남중학교 담장과 대지경계선 사이에(광남중학교 학교용지 내에) 지역주민들이 등산로로 사용 중인 유휴부지가 있음.
- 본 주택단지 내 206동과 205동 전면에 광남중학교 대지경계선에서 5m 폭으로 공공조경을 조성할 예정임.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인접대지(완충녹지, 근린공원 등)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 인근 및 동측 회안대로에는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주택단지의 동측 회안대로에는 제43번 국도가 위치해 있음. 해당 국도는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도로와 대지경계선 사이에 위치하는 완충녹지가 도로구역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음. 향후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도로의 확폭이 가능함.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별도의 방음벽 설치 요구나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레벨조정으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다만 관계관청에서 지구내 공사 차량 이동으로 입주시점 소음측정에 따라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현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와 접한 사업지 경계 밖 도시계획도로는 시유지로서 외부인의 출입, 차량통행, 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와 무관함.
- 초등학생은 통학여건 및 학생배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배치될 예정임.
- 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의 학생배치 시설 여건에 따라 배치학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배치 시설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원거리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고등학생은 인근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서 예정학교까지의 통학환경을 미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해당 개발사업의 추진 시기 및 주변 개발사업 여건 변화, 경기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중장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표, 취학예정 학생수의 증감 추이 등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 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 설립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주택의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주변 시설물의 계획 및 설치는 시행위탁자와 무관하고 각종 홍보물(모형도 등)상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분양시점의 택지개발시행자(디에스디삼호(주)) 자료를 참고한 내용으로 추후 관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택지개발시행자(디에스디삼호(주))와 광주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는 추후 개발 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완충녹지 등은 택지개발시행사(디에스디삼호(주)) 자료를 토대로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며 향후 변경·취소될 수 있음.
- 택지개발시행사(디에스디삼호(주))의 개발계획 및 개발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단지 내 보행통로, 완충녹지 등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기타 통행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으로 한국전력공사 등의 지중화 맨홀박스 및 패드스위치, 지상변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단독주택지, 유통상업지역 등이 위치하며, 해당 시설 및 개발사업의 이용 및 추진 과정에서 소음,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무관함.
- 단지에 인접한 도로와 기타시설물로 인하여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의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사업지 북측에는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변 공원과 보행자도로,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근린공원, 체육공원 및 녹지 등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시행위탁자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택지개발시행사(디에스디삼호(주))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위탁자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해지구 내부와 인근에는 교량, 지하차도, 종교시설,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로 시공예정인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신설(이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위탁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시행위탁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에 인접한 도로 등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단지 내 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인근에 상업용지(근린생활시설 포함),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완충녹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간섭, 소음 등) 및 유해시설 등은 주택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인접한 공원에서 소음, 진동 및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근린공원에는 양호한 산림이 형성되어 있고 단지와 인접하여 여름철을 중심으로 사계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공원 접근로를 단지 내 공공조경 공간에 설치함에 따라 일부 세대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니 단지 배치 및 공공조경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각종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써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이버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서측 도시계획도로에서 단지로 접근하는 차량동선은 남측(광남중학교 정문)에서 우회전 진입토록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에 따라 향후 광주경찰서와 광주시청 협의를 통해 북측(태전중앙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체계로 변경이 가능함. 또한 같은 절차를 통해 횡단보도의 위치와 폭원이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

-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은 분양신고 및 착공신고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위탁자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입주 및 등기(면적정산)〉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함.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한 입주지연 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세대 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 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지구의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토록 함. (단, 세대 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 작성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의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짜리 미만에서 절삭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는 세대정원 진출입을 위한 공간이 아님.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상 해당 면적이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았음. 따라서 비상시를 제외한 일상적인 세대정원에의 접근은 주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홍보물〉

- 각종 홍보·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시행위탁자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의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승인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모형도 및 각종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 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기타사항〉

- 단지 인근 대중교통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특성상 미분양 세대는 시행위탁자의 판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 유동화, 임대 또는 기관 등에 매각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는 입주개시 전에 시행자가 선정하여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관련된 사항

〈공통사항〉

- 본 주택단지는 북사면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남측주동이 북측주동보다 높은 지표면에 위치하고 있음. 남측에 광남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서측에 공동주택단지가 있음. 이로 인해 일조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일조조망권이 세대별로 차이가 남. 일조시간이 짧은 동지를 전후로 하는 시기에는 일부 세대의 경우 저층부 일조 환경이 열악할 수 있음.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여건, 일조환경 등 단지 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배치계획 및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쾌적성, 사생활보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쾌적성이 미흡하고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 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배치 및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세대 간 시야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조경, 사인 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자문, 심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일 등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공용부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차혼용도로인 단지 내 도로와 일부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세대 및 단지 내 단지 내 보행통로·공공조경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부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분리수거함 주변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분리수거함이 인접한 세대에서는 악취, 소음,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또한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공간은 지붕이나 가림 막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가스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결정됨. 이로 인한 소음,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중계 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라며, 각동 지상주변,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일부 공간은 인접한 세대전용 테라스 또는 전용공간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하여 DA(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지상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및 소음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DA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건물의 단열 마감은 외단 열 방식이 기본사항이나 세대 내 일부천장 및 일부 부대시설 등은 내단열 방식으로 시공되므로 설계 도서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장마감은 벽돌타일 붙이기 및 일부 드라이비트 계열의 외단 열 방식으로 시공되며, 부위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설계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으로 설치됨.
- 일부 외벽 및 주차장 내부 등은 조적이 아닌 도장마감으로 시공하며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공용 및 부대시설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개인소유권 이전의 지장물, 경작지 등의 통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내용, 모형도, 홍보물 등에 없는 통행로가 주변토지통행권에 의해 개설 될 수 있음.
- 세대별 주변식재 및 경계식재의 높이, 수종이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세대하부 필로티 바닥레벨 차이로 인해 세대 간 단차 또는 구배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전면의 단지 내 도로와의 단차가 발생함.
- 단지 주변으로 1m 이상의 레벨 차이가 나는 부분 등에 일부 구간에만 안전상의 이유로 경계식재 또는 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으나 공공조경 부분에 대하여는 울타리의 설치가 불가함. 1m 이상의 레벨 차이가 나는 곳이라도 조경계획 상 식재를 우선하고 입주민의 통행에 전용하는 공간이 아닌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음. 해당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행위탁자와 시공사 및 설계자가 책임지지 않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02g임.
- 단지 모형 및 설계도서의 조경계획 및 식재, 외부 시설물,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조경은 공공에 상시 개방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훼손시킬 수 없으며, 공공조경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전체 입주자 공동 부담임.
- 단지 내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로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도로에 대한 일시 또는 영구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는 입주자 부담임.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의 폭은 6m이며, 보도의 폭은 필로티하부 공간을 포함하여 1.0m 이상을 조성함.
- 단지 내 도로는 일반차량 외에 소방차와 구급차 및 이삿짐차량 등의 비상차량을 위한 비상차량 동선을 겸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세대는 단지 내 도로 및 보행통로에 차량 주차 등의 행위로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주택형 별 평면에 따라 개폐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게 되어 있음. 본 단지의 경우 전 세대가 1층을 통해 피난할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과 별도로 4층 테라스에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를 설치함. 따라서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피난구를 이용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장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1층 공용주차장의 이용 시 세대 1층 현관문의 개폐를 방해하는 위치에 주차하지 않아야 함. 또한 연립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내화구조로 구분되어 있음.
- 세대는 필로티 하부의 공용주차장과 현관을 통해 진입하며 이는 공용부분으로 소유할 수 없고, 필로티 하부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함에 따라 1층과 2층은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색상 및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동별현황〉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전체가 저층형 주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동의 1층 및 2층은 산책로, 단지내외 도로(보·차 겸용도로, 비상차도), 단지 내 보행통로, 지붕장식물, 공공조경 및 단지 내 조경시설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함 등에 의한 악취, 분진,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각 세대별 일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게시하고 각 세대별 일조권이 미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거주 환경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관해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일조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201동 102~105 및 109호, 202동 101~108호, 204동 102호, 207동 101~109호, 208동 101~105호, 209동 101~102호, 210동 101~109호의 일조권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호실은 일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단, 시뮬레이션 결과는 건축물의 준공 후 실제 여건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205동과 206동은 거실 전면에 공공조경이 조성되어 있고 209동과 210동은 거실 전면에 단지 내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있어, 일부 세대의 경우 거실방향으로 대형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함. 소형 이삿짐은 후면의 작은 창을 통해 내부 반입이 가능하나 대형 가전기기와 피아노 등 부피가 큰 이사짐은 인력을 이용해 운반 및 내부 반입하여야 함.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삿업체 지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음.
- 동하부 PIT 부분의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 및 슬라브 두께, 지붕과 지붕장식물의 세부 형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단지별 동 명은 입주 시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쉼터 등 외부공간이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북측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서측과 남측에는 공공조경이 위치함에 따라, 이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 꺾임각도에 따라 필로티하부 공용주차장과 일부 창호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측벽 세대 중 일부 세대에 창호를 설치함.
- 우수처리 계획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인접세대의 우수가 유입될 수 있고, 우수배관이 경유되어 설치 될 수 있고 세대 정원 또는 외부공간에 우수 홈통받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도시가스 및 수도의 인입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정원 또는 외부공간 벽면에 계량기 및 인입관로가 설치될 수 있음.
- 전기, 통신설비 계획에 따라 주동 인근에 일부 설비패드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인접세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과 2층은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경사지인 단지의 특성으로 1층과 2층의 바닥과 전면의 지표면과의 레벨차이가 다른 세대가 있음.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 내 설계 도서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201동 : 단지외부 서측으로 15m도로가 위치해 있고 주동의 남측 전면에 단지 주출입구가 있음. 주동 북측 배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있음. 도로와 2개의 출입구에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주출입구를 통행하는 주민에게 세대 저층이 노출될 수 있고 환경권 등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동측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계단이 있고 인접한 202동과 203동 사이 공간에 분리수거장이 있어 201동과도 가까운 위치임. 따라서 계단과 분리수거장에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음. 201동과 210동 서측 세대 사이에 문주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세대의 경우 문주로 인한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경관조명에 의한 현휘로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및 근생주차 출입구 옆 녹지구간에 한국전력공사 전력인입용 TR이 설치될 수 있음.
- 202동 : 단지외부 서측으로 15m도로가 위치해 있고 북측으로도 15m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단지외부 동측으로 10m의 완충녹지와(도로구역 중복결정) 폭 20m의 국도 43번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단지 북측 도로 맞은편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음. 사거리 대각선방향으로 단독주택지가 조성되어 있음. 주동의 남측 전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있음. 주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과 3개의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어린이놀이터에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보행자에게 세대 저층이 노출될 수 있고 환경권 등이 침해 받을 수 있음. 동측에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고 인접한 203동 사이 공간에 분리수거장이 있음. 따라서 계단과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음. 세대는 필로티 하부의 공용주차장과 현관을 통해 진입하며 이는 공용부분으로 소유할 수 없고, 필로티 하부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함에 따라 1층과 2층은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정원은 주동 북측 근린생활시설 상부 인공지반 위에 조성이 되며 세대정원 단부 하단에 근린생활시설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어 간판 조명에 의한 현휘로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일조가 양호하지 않아 식생에 적합한 환경이 아님. 서측 끝 세대 하부 필로티는 회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대는 회차공간 내에 주차를 할 수 없음.
- 203동 : 단지외부 북측으로 15m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단지외부 동측으로 10m의 완충녹지와(도로구역 중복결정) 폭 20m의 국도 43번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주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과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주민에게 세대 저층이 노출될 수 있고 환경권 등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2동 사이 공간 북측에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로 이어지는 옥외계단이 있고 인접한 202동 사이 공간에 분리수거장이 있음. 204동과의 사이 공간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로 접근하는 옥외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음. 따라서 옥외계단과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음. 203동은 별도의 옥외세대정원을 조성하지 않음. 다만 공용창고 전면 외기에 노출된 공간에 세대정원과 유사한 형태의 조경공간을 계획하였으나 단지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시설임. 본 주택단지의 지형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3동에 한정하는 공용시설로서 공용창고를 계획하였고, 창고 전체 면적을 203동 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을 각 세대에게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함. 공용창고는 실제 지형에 대응한 설계변경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등으로 실제 배분되는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태양광 패널을 203동 일부 세대 지붕에 설치하였으며 상세한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04동 : 단지외부 동측으로 10m의 완충녹지와(도로구역 중복결정) 폭 20m의 국도 43번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주동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커뮤니티시설과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주민에게 세대 저층이 노출될 수 있고 환경권 등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인접한 205동에 분리수거장이 있음. 203동과의 사이 공간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로 접근하는 옥외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음. 주동의 남측에는 지하1층인 공용창고층으로 접근이 가능한 옥외계단과 전망대가 있음. 따라서 전망대와 옥외계단과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음. 204동은 별도의 옥외세대정원을 조성하지 않음. 다만 공용창고 전면 외기에 노출된 공간에 세대정원과 유사한 형태의 조경공간을 계획하였으나 단지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시설임. 본 주택단지의 지형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4동에 한정하는 공용시설로서 공용창고를 계획하였고, 창고 전체 면적을 204동 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을 각 세대에게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함. 공용창고는 실제 지형에 대응한 설계변경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등으로 실제 배분되는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5동 : 서측에 단지내보행로가 위치해 있고 단지 외부 남측에 광남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동측에 분리수거장이 있음. 남측 거실 전면에 대지 내 시설로서 공공조경이 5m 폭원으로 조성되어 있음. 같은 주택유형이더라도 205동은 세대정원이 제공되지 않는 주동임. 북사면의 지형특성에 따라 2층 거실이 공공조경과 같은 레벨에 형성이 되도록 단면계획을 수립하였음. 일부 세대는 광남중학교 학교건물과 조경식재의 영향으로 일조환경이 양호하지 않을 수 있음.
- 206동 : 단지외부 서측으로 15m도로가 위치해 있고 동측에 단지내보행로가 위치해 있음. 단지 외부 남측에 광남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서측과 남측 거실 전면에 대지 내 시설로서 공공조경이 5m 폭원으로 조성되어 있음. 같은 주택유형이더라도 206동은 세대정원이 제공되지 않는 주동임. 북사면의 지형특성에 따라 2층 거실이 공공조경과 같은 레벨에 형성이 되도록 단면계획을 수립하였음. 일부 세대는 광남중학교 학교건물과 조경식재의 영향으로 일조환경이 양호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조경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로서 서측의 공공조경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고 남측의 공공조경은 남측근린공원으로 접근하는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음.
- 207동 : 단지외부 서측으로 15m도로가 위치해 있고 동측에 단지내보행로가 위치해 있음. 북측에 단지 내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있음. 세대정원은 주동 북측 단지 내 보행통로 측에 조성이 되며 일조가 양호하지 않아 식생에 적합한 환경이 아님.
- 208동 : 서측에 단지내보행로가 위치해 있음. 북측에 단지 내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있음. 세대정원은 주동 북측 단지 내 보행통로 측에 조성이 되며 일조가 양호하지 않아 식생에 적합한 환경이 아님.
- 209동 : 서측에 단지내보행로가 위치해 있음. 남측에 단지 내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있음. 북사면의 지형특성에 따라 남측의 208동이 높은 지표면에 건립됨. 일부 세대는 남측 주동의 영향으로 일조환경이 양호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2층 거실이 보행통로와 같은 레벨에 형성이 되고, 1층은 지하외벽에 접해 있도록 단면계획을 수립하였음. 세대정원은 주동 북측 단지 내 보행통로 측에 조성이 되며 일조가 양호하지 않아 식생에 적합한 환경이 아님.
- 210동 : 단지 외부 서측에 15m도로가 있음. 동측에 단지내보행로가 위치해 있음. 남측에 단지 내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있음. 북사면의 지형특성에 따라 남측의 207동이 높은 지표면에 건립됨. 일부 세대는 남측 주동의 영향으로 일조환경이 양호하지 않을 수 있음. 세대정원은 주동 남측 단지 내 보행통로 측에 조성이 되며 일조가 양호하지 않아 식생에 적합한 환경이 아님. 또한, 2층 거실이 보행통로와 같은 레벨에 형성이 되고, 1층은 지하외벽에 접해 있도록 단면계획을 수립하였음. 주동의 북측 전면에 단지 주출입구가 있음. 도로와 단지주출입구에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주출입구를 통행하는 주민에게 세대 저층이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 및 환경권 등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201동과 210동 서측 세대 사이에 문주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세대의 경우 문주로 인한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경관조명에 의한 현휘로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음.

〈주차장 및 차량동선체계〉

- 연립주택 세대 당 주차대수는 1.316대로 계획함.
- 세대하부 필로티에 설치한 주차장은 관련법에 따른 공용주차장으로 각 주차구획의 법정주차대수는 1대이고 연접주차로 계획하지 않음.
- 세대하부 필로티 주차장 차량 도어 개폐시 일부 간섭 및 불편할 수 있으며, 이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하부 필로티에 설치한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편리하고 안전한 단지 운영을 위해 상부 세대가 우선하여 사용권한을 가짐. 다만 세대하부 주차공간을 개별 세대가 전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각 세대 간 주차공간 지정 및 구획은 준공 후 입주자간 정한 관리 규약을 통해 운영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따라서 각 세대 하부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함.
- 세대하부 주차장에 대형차 2대로 연접으로 주차하는 경우 전면의 단지 내 도로와 보행통로에 간섭이 발생함. 따라서 일시방문 및 응급상황 등을 제외하고 연접주차를 지양하여야 함. 다만 입주 후 입주자회의 등 단지를 대표하는 주택관리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규약을 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연립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임. 다만 원활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연립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사용 부분을 구획함.
- 주차공간 외 별도의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세대별 지정 주차공간에 대한 별도의 지정 및 표시는 없음.
- 1층 필로티구조 공간에 해당하는 면적은 전 세대의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 주차구획은 건물벽체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주차공간은 단지 공용시설로 인접세대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시 장애인주차공간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 및 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세대 하부 주차장 바닥은 블럭마감이며 재질,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는 보차혼용도로로 보행로를 통해 차량이 각 세대 하부 공용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소방차 진입 시 보행로를 일부 포함한 6m를 유효 폭으로 사용함.
- 세대하부 공용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으로 계획됨.
- 201동과 202동 및 206동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세대하부 필로티에는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회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음. 해당 세대는 반드시 이를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함. 또한 회차공간은 반드시 개방되도록 주민 자치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회차공간 내에 주차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01동 하부 별도 1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에서 모든 동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아님. 지하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법적주차대수의 추가사항이므로 각 동과 지하주차장이 보행거리상 불편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공동으로 사용되며, 지하주차장 차도는 유효높이 2.3m(주차면은 2.1m)로 계획되어 있어 탑차 및 택배차량의 출입에 제한을 받음.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인근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 팬, 설비시설 등)로 인해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자에 의해 결정되고 커뮤니티 시설 등의 내부시설물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의 부대복리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관리의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부대복리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운영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해당 공간을 인계할 예정임.(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전기세 등의 관리비는 해당 공간의 관리주체가 부담)
- 부대복리시설에는 태양광발전 패널,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빛은 반사 및 산란에 의해 인근 세대는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상공간에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이 설치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의 조항에 의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함.
- 부대복리시설은 아래와 같이 계획됨.
  - 카페,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 204동 하부 – 관리사무소 : 201동 하부 – 근린생활시설 : 202동과 203동 하부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근린생활시설 제외)
- 부대복리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 실외기가 각 동 하부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실시설계 중에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이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일부 창호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임.
- 본 주택단지의 지형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지하구조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음. 다만 실제 지형에 대응하여 부대복리시설의 벽체 등 구조물이 지면에 접하는 면적과 높이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창호의 위치·크기·축소 등의 변경이 가능하고 벽체의 길이·두께의 변경이 가능함. 또한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목구조물이나 조경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연립주택과 별도로 분양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활성화와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에 따라 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의 행위에 대한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이에 대한 이의를 연립주택 입주민이 제기할 수 없음.

〈지반〉

- 측량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대지경계부에 단차 극복을 위한 구조물(옹벽, 조경석 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레벨조정으로 보행자통로와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사 중 지반여건에 따라 지반보강이 필요한 경우 지반보강의 범위와 공법 및 이에 수반하는 설계가(기초 및 파일과 이에 수반하는 배근상세 등 구조계획) 변경될 수 있음.

〈기계실 등 공용설비〉

-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단지로 추후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 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됨. (단, 일부 공간에서는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조경〉

- 단지 내 설치하는 공공조경과 전망대는 태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공공에 개방하는 장소로서 학생들의 통학로와 남측근린공원에의 접근로로 사용이 가능함. 이 시설은 24시간 개방하여야 함.
-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와 수량,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저층세대 조경부분의 식재종류는 각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의 배치 및 향에 따라 일부 조경구간 식재의 생육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공통사항〉

- 본 주택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
- 세대 내·외부에 설비 및 전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어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급수, 오수 배관 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벽,천정면에 설치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외벽의 창호크기와 형태가 일부 다르거나, 외벽 및 건물 형태가 다른 주택형이 있고, 평면이 좌우 대칭인 주택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를 통해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사이버견본주택,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장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최종마감재(벽지, 타일, 바닥재 등)가 미시공됨.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마감이 되지 않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현관문 앞에 우수 유입·차단 및 단지레벨처리에 따른 계단이 형성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현관에 생성되는 계단의 단수가 타세대 및 타동과 다르게 적용됨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4층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시설로 본 단지는 설치대상이 아님.(「건축법시행령」제46조 4항)
- 주차장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단지 내외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상주차장, 단지 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발생하는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단지내외 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에어컨실외기, 기계전기실 및 급배기구, 주차장(장애인주차장 포함),분리수거함, 전기분전함, 가로등 등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 소음, 해충, 악취, 빛에 의한 눈부심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상부 옥외공간(옥상 등) 점검을 위해 세대 내부를 통한 진입 및 보수작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으로 실 시공시 세대 내에 스프링클러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음.
- 각 단위세대(일부 제외)는 내부에 계단이 있고, 세대 내 별도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계단 난간대 디자인 및 디테일은 세대별로 상이함. (이사 시에는 차량 접근 동선, 주동의 위치 및 단위세대 창호크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형 이삿짐 및 중량물의 운반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각 단위세대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우수관, 오수관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또는 내부에는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계량기함이 설치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벽걸이, 스탠드용 에어컨의 선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되며, 실외기에 연결되는 냉매배관은 옥상 및 테라스의 외부공간에 설치될 예정임.
- 단지에 적용된 홈 네트워크시스템 등 이용 시 통화료 이외의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단지내 별도의 홈네트워크 앱은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의 삼성전자 스마트씽스 앱이 제공됨. (삼성전자 IoT 적용)
- 삼성전자 스마트씽스 앱의 기능 및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며 운영과정에서 별도의 알림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제공되는 삼성전자 홈IoT 기능외에 고객이 별도로 삼성전자 스마트씽스에 연동되는 스마트가전 및 센서류를 구매하여 스마트씽스 앱에 연동 할 수 있음.
- 본 시공 시 상판류, 타일류의 이음새 및 타일나누기는 변동될 수 있음.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음.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주택형 별 평면에 따라 개폐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적용된 주방가구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국내산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 및 안내문구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욕실문은 목문이 설치되고, 부식방지를 위해 문짝은 ABS수지로 시공되며, 침실문짝과는 재질이 다름.
- 세대 내 가구, 바닥마루재, 타일 등의 자재선정은 분양 후 주요업체의 입찰을 통하여 결정되며, 견본주택 시공자재의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신제품개발 등의 경우 동급이상으로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 및 계단 펜던트 조명은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기본 제공되는 조명기구는 견본주택에서 해당 품목을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의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등은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의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지형 및 배치계획 등의 여건 및 동측 공동주택과 남측 학교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비스 면적의 차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보일러 위치는 세대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다르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외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관리가 요구됨.
- 가스배관 설치는 보일러실 까지만 설치되며 추후 가스레인지 설치시 배관공사는 개별적으로 시공되어야함.
- 각실 난방 온도제어를 위해 각 층의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는 싱크대하부 및 붙박이장의 사용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되는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주택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예측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맞게 설계됨.

〈세대정원〉

[공통사항]

- 세대정원이 제공되지 않는 세대가 있으므로, 단지배치도를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공간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가 인테리어 등 추가적인 시공 및 그 시공의 하자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 등의 책임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지 않으며, 해당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각 세대의 세대정원면적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평면 투영면적 면적을 수치화한 것으로, 공간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 도서를 통해 해당공간의 형태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과의 차이에 대해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업부지 특성에 따른 동배치로 인해 주택형, 세대별 해당 공간의 면적이 상이하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1층 세대정원(해당주택형에 한함)]

- 본 단지는 태전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다양한 주호(집의 형태) 제공을 위해 저층부 전용정원 및 전용출입구 설치 권장에 따라 전용 세대정원(베란다 및 테라스 등 전용 외부공간을 포함한 의미로 이하 같음)이 계획되어 있어, 각 세대별 전용 세대정원이 제공된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음.
- 206동과 205동은 세대전용 마당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본 주택단지 내 206동과 205동 전면에 광남중학교 대지경계선에서 5m 폭으로 공공조경을 조성할 예정임. 공공조경 계획 시 학교용지와의 레벨차이를 극복하고 세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조경 내 식재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입주 후 205동과 206동 세대는 전면에 조성한 공공조경 내 시설과 식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세대정원이 있는 주택형의 정원면적은 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대정원의 면적의 크기와 형태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고 동일 주택형에서도 위치별로 면적의 크기와 형태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 도서를 통해 해당 세대의 세대정원 면적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세대정원의 배타적 사용권리, 관리 및 유지방안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본 사업의 사용승인 후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규정하는 것에 계약자 전원이 동의함.
- 인접대지와의 고저차로 인해 일부 동의 경우 거실 정면에 세대정원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세대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정원은 배타적 사용권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
- 각 세대 간 세대정원 면적의 크기와 형태의 차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세대정원의 크기는 주변여건(레벨, 조경석, 대지경계, 지장물, 배수로 등)에 의해 크기, 형태 및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도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시 1층 세대정원의 경계부는 부분적으로 생울타리가 제공되며, 실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1층 세대정원의 조성 및 변경 등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임.
- 견본주택 내 전시된 84A 주택형의 경우 연출을 위하여 데크가 설치되어있으나, 본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대로 마감 예정임.
- 단위세대간 전면도로와의 레벨차이에 따라 위치별로 세대정원의 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
-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정원은 거실 및 주방바닥 레벨보다 높거나 낮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음.
- 대지 경계부 및 일부 세대의 세대정원에는 측구(녹지, 공원의 배수를 위한)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정원 내 경계석, 배수로(트랜치) 또는 각종 맨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시설물 점검을 위한 진입 및 보수작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정원은 입주 이후 임의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해당공간에는 세대 간 경계턱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세대에 물, 오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함.

[옥상 세대정원(해당주택형에 한함)]

- 베란다 및 테라스를 사회 통념상 테라스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본 단지의 경우 소비자의 혼선을 피하고자 "테라스"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물 상의 세대정원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며, 해당 공간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음.
- 해당공간의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해당공간은 평시에는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화재 등의 비상 시 대피로로 사용하는 탈출구에 대한 조경식재 이외의 지장물의 설치와 파손을 어렵게 하는 구조로 변경할 수 없음.
- 해당공간에는 우오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해당공간에는 어닝(차양)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 및 해당공간에 면하여 화장실 통기관 또는 환기구, 보일러 연도가 설치될 수 있음.
- 해당공간에 면한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해당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됨. 난간의 재질은 테라스 내 식재 여부 및 활동을 고려하여 유리난간과 철재 난간을 구분하여 시공함. 테라스의 난간대는 추락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기 위해 디자인, 재질,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해당공간의 세대 간 간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며 재질, 색상 및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공간에 면한 창호에는 크리센트 잠금장치가 설치되며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진출입시 열림 상태가 유지되오니 외출 시에는 보안을 위하여 반드시 잠금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주택형의 경우 해당공간을 통한 이사 진행 시 대형 가전기기, 피아노 등의 경우 내부반입이 어려울 수 있음.
- 해당공간은 조경, 파고라, 놀이기구 등 시설물 설치 시 하중 제약이 있음. 완공 후 입주민에 의한 추가 공사 시 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금하여 주시기 바람.(예시: 흙, 대리석, 데크 나무 등)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는 시공사의 설치기준에 의해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 관리용도의 수전이 설치되며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로 및 동파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은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테라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며, 테라스는 각종 해당세대가 독립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단순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계약 전 이에 대해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지붕과 테라스 사이에 집중호우 및 강설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턱이 설치될 수 있음. 입주 후 테라스의 임의변경에 의한 테라스 바닥높이 변화로 발생하는 물넘침 또는 낙엽등 생활 오염물에 의해 배수드레인이 막혀 발생하는 물막힘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층 테라스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테라스는 본 공사시 세부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진출입시 실내외부의 단차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히 유아, 노약자 등 주의가 필요한 입주자의 난간 접근을 차단하는 등 추락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창호〉

- PL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 및 삼중유리 시스템 단창이 설치됨.
- 2층 창호의 일부는 주방 가전의 설치를 고려해 개폐가 되지 않음.
- 침실 북측 'ㄱ'자 창호의 측면부는 꺾임 각도에 따라 일부 세대의 창호폭이 달라질 수 있음.
- 블록별 창호 설치사양은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된 것으로 추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로 각 실별 창호사이즈는 상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세대정원 및 해당공간에 면한 방수턱 확대 시공 등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됨.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창호의 일부는 소방법에 따라 소방관진입창으로 계획하였으므로, 관련법의 개정·법해석의 차이·적용·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준공 심사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크기, 유리두께, 추가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체 입주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확장〉

- 외부 창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발코니였던 공간이 거실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외벽층간균열로 인한 외기유입과 침습으로 인한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발코니 창호는 층·향에 의한 풍압 등의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이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세대별(실별, 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중샷시, 단열재 추가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조절기, 분전반 등의 사양 및 수량,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도 있음.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유리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
- MMA 상급적용 주방 상판은 제품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 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기계, 난방, 전기, 설비〉

- 개별난방 방식(가스보일러)이 적용되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됨)
- 보일러 연도설치로 인해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적법절차에 개별가스보일러 방식으로 계획 되었으며 추후 난방방식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 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됨.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살수설비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에만 계획이 됨.
- 세대 내부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음.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보일러실용 자동확산 소화기와 ABC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만 설치됨.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온도조절기 등은 사양 및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설계 과정에서 일부 미설치 될 수도 있음. (동일한 주택형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 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커텐박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외부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되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는 실내 또는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드레스 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됨.
- 각 단지 내 일부 동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인근 세대에는 시야간섭, 눈부심, 조망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등 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 내 배수소음(화장실, 세탁기 및 주방배수 등)이 세대 내 아래 층에 전달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부동수전은 동파방지를 위해 동절기에는 퇴수작업이 필요함.
- 세대 지붕 및 옥상에 태양광발전 패널 및 장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 설계 및 성능시험 과정에서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인근 세대에는 시야간섭, 눈부심, 조망 등의 피해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거실 및 침실 천장에 기계환기설비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 세대내 우수입상관, 배수입상관, 선홈통, 드레인 등의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지붕재는 유지보수에 유리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우수선홈통이 각 세대별 옆 세대와 공동 사용됨을 인지하시기 바람.
- 내부벽체는 건식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됨으로 중량물의 설치를 지양하시기 바람.(중량물 벽면 부착 시 보강조치 필요함)
- 시스템창호의 개폐 시 일반창과 대비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제품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테라스와 세대정원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형은 선택이 불가함.
-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 주택유형과 유사수준의 마감자재가 적용되며 견본주택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 주택유형과 유사수준의 마감자재가 적용되며 견본주택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개관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음.
- 실제 견본주택 설치품목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되며, 또한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 저층부 특화마감, 단지 내 포장부위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설치 및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시행위탁자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시행위탁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지붕 마감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조명등(식탁용 조명등 포함)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으며 공급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방화도어 및 일부 도면에 없는 개구부는 견본주택 운영 상 안전을 위해 소방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 시공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소파·침대·식탁 등의 가구와 커튼·침구류·액자 등 소품류, 냉장고·TV·홈시어터 등의 가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품목이며, 디스플레이 조명은 본 시공 시 설치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견본주택 공개기간: 정당당첨자 계약일 까지 공개후 철거예정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되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므로 시행위탁자에 문의하여 영상을 볼 수 있음. (다만,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쳐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준공 후 수분양자가 추가로 설치한 일체의 건축물(불법건축물 포함)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음.
- 견본주택에 표현되지 않은 가스관, 보일러 선홈통 등은 본 공사시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다르게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계약관련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또는 입주자의 요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위탁자,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본건의 공급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함.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신고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3)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향후 시행위탁자의 기존 현장, 후속 분양 현장 및 동업 타사 등의 마감 수준에 준하는 상품 및 마감재 등 개선 요구는 불가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함.
-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보증기관 및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통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사용기간 : 계약시점 ~ 입주완료 시점)
- 본건 공급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에 따름.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되, 계약자와 사업주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 기밀성능 KS F2292 1등급이상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 급수펌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일부 :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부속동 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절수형 설비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적용	– 일부 동 지붕 설치, 공용부 전력 적용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Ⅵ 기타 주요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VAT 별도)	사업장 소재지
공사 감리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서암건축사사무소(건축) 라인이엔씨(기계, 전기, 통신, 소방) 테크피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토목)	219,590,900 68,800,000 45,454,545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 60-1, 3층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19번길 10-27, 2층(송정동, 부영빌딩)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200, 203호(송정동)

※ 감리회사는 업체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17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득한 도시형생활주택임]

- 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43,486,450,000	제 01292021-101-00051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시행위탁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이후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시행위탁자·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시행위탁자·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시행위탁자·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시행위탁자·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고지사항

- 본 건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에이치포렛,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이 2021년 04월 09일자로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공급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시행위탁자(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일체의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안강건설에게, 공급계약 해제(해지)시 공급대금 반환 채무 이행 등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에이치포렛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지로 신탁계좌로 입금된 공급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PF 대출금 상환포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시공상 하자와 관련한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인 ㈜안강건설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에이치포렛과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모든 권리·의무는 ㈜에이치포렛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에이치포렛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 본 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미이행에 따른 제반 비용과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129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시행위탁자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 수탁사	시공사	시행 위탁사
상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주)안강건설	(주)에이치포렛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대치동, 코스모대치타워) 12층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11번길 4, 2동 2층
등록번호	120-81-67944	312-86-75223	134211-0235237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15-10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시에라 태전 031-726-200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11번길 4 http://lasierra.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라시에라 태전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 및 인허가 사항이 우선합니다.)